

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

『물환경보전법』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도순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3. 30.

익 산 시 장

1.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유

- 도순저수지 내에 멸종위기종인 수달, 남생이 및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있으며, 근래 배를 이용한 전문적인 낚시 인구 증가로 수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으며,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인해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.
- 따라서 도순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.

2. 낚시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

시설명	위치	금지기간	비고
도순저수지	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290외 30필지	년 중	도면 및 지번 환경관리과 비치

3. 낚시금지구역 위치도 : 붙임 1 참조

4. 주요내용

가. 낚시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

- (1) 금지기간 : 년중
- (2) 행위제한 :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 일체 금지

나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- (1) 위반행위 :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
- (2) 과 태 료 :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규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